



양산사송 에비뉴원 신흔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금 오백만원 정액제 5년무이자 할부, 잔금납부150일)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외송로 49

■ 공급대상 : A-2블록 신흔희망타운(공공분양) 320세대 중 잔여세대 82세대 [전용면적 55㎡]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구성원인 성년자 중 신흔희망타운 신청자격을 갖춘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합니다. (단 1세대 2인 이상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기본형(전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옵션(201동 303호에 해당),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양산사송 A-2블록 479세대 중 금회공급대상 주택은 82세대입니다. [신흔희망타운(공공분양) 320세대, 행복주택 159세대]



■ 양산사송 A-2블록 신흔희망타운의 브랜드명은 'AVE.1'(에비뉴원)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10.(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4.14.)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2023.04.03., 2023.06.14., 2023.09.11., 2024.04.29., 2024.06.11., 2024.11.04., 2025.03.07., 2025.06.04.)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4.14.)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팝플랫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대금납부조건은 5년 무이자 할부분양[계약금 5백만원(옵션계약금 포함)] 및 입주시 진금납부(150일)이며,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으로 모집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결정 후 해약세대(58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후에도 대지권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양산사송 에비뉴원 공공분양주택의 기 계약자 및 해약자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양산사송 A-2블록 신흔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320세대) 및 행복주택(159세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전 사이버건본주택(www.yangsan-sa-song.snhmtn2.com) 및 팝플랫, 샘플하우스(201-503) 통하여 주택평형 및 구조 등을 반드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계약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후에는 해약이 불가하며 당일 17시까지 계약체결(계약서작성완료)하여야 합니다.(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완료시에는 계약으로 인정되며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신청하여 중복청약을 하거나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자격검증 범위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보다 빠르므로, 입주전까지 증명하여야 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만7세미만)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흔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25.11.10(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계약장소	양산시 외송로 49 에비뉴원 201동 503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계약일정	2025.11.13. 10:00 ~ 2026.02.28.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셔야 하므로(현장 수납 불가), 계약금 입금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이체한도 확인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다)]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시양,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이후 무주택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종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과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자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 요 :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잡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 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기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주택이면서 용자금 대환(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 (그 외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종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hn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담보인정비율 70%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증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양산사송 A2블록 신흔희망타운(공공분양) 320세대 중 잔여세대 82세대[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201~503 샘플하우스 운영, 제외]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총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계악분	금회공급 공공분양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A-2	055.0000A	합 계								320	238	82				
		55A	확장	55.92	21.6308	8.3259	42.8501	128.7268	39.3964	48	39	9	25			
	055.0000B	55AH	확장	55.92	21.6308	8.3259	42.8501	128.7268	39.3964	158	117	41	25			
		55B	확장	55.91	21.6270	8.3244	42.8425	128.7039	39.3894	34	29	5	25			
		55BH	확장	55.96	21.6463	8.3318	42.8808	128.8189	39.4246	80	53	27	25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더라도 A/AH, B/BH타입으로 구분됩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복지관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총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닦방방식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금액(주택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금액)

■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총주택가격	주택가격	옵션가격 (발코니확장비)	계약금(계약시)	입주잔금(계약일로부터 150일이내)	할부금				
								주택	옵션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무이자 할부 (입주잔금 납기일로부터 5년)
055.0000A	55A	1층	212,747	205,730	7,017	4,000	1,000	78,285	55,000	74,461		55,846
		2층	214,937	207,920	7,017	4,000	1,000	79,709	55,000	75,227		56,420
		3층	219,317	212,300	7,017	4,000	1,000	82,556	55,000	76,760		57,570
		4층	223,697	216,680	7,017	4,000	1,000	85,403	55,000	78,293		58,720
		5층~최상층	225,887	218,870	7,017	4,000	1,000	86,826	55,000	79,060		59,295
	55AH	1층	212,747	205,730	7,017	4,000	1,000	78,285	55,000	74,461		55,846
		2층	214,937	207,920	7,017	4,000	1,000	79,709	55,000	75,227		56,420
		3층	219,317	212,300	7,017	4,000	1,000	82,556	55,000	76,760		57,570
		4층	223,697	216,680	7,017	4,000	1,000	85,403	55,000	78,293		58,720
		5층~최상층	225,887	218,870	7,017	4,000	1,000	86,826	55,000	79,060		59,295
055.0000B	55B	1층	210,550	203,500	7,050	4,000	1,000	76,857	55,000	73,692		55,269
		2층	212,710	205,660	7,050	4,000	1,000	78,261	55,000	74,448		55,836
		3층	217,040	209,990	7,050	4,000	1,000	81,076	55,000	75,964		56,973
		4층	221,370	214,320	7,050	4,000	1,000	83,890	55,000	77,479		58,109
		5층~최상층	223,540	216,490	7,050	4,000	1,000	85,301	55,000	78,239		58,679
	55BH	1층	210,720	203,670	7,050	4,000	1,000	76,968	55,000	73,752		55,314
		2층	212,890	205,840	7,050	4,000	1,000	78,378	55,000	74,511		55,883
		3층	217,220	210,170	7,050	4,000	1,000	81,193	55,000	76,027		57,020
		4층	221,560	214,510	7,050	4,000	1,000	84,014	55,000	77,546		58,159
		5층~최상층	223,730	216,680	7,050	4,000	1,000	85,424	55,000	78,305		58,729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등의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주택가격이 적용됩니다.
- ※ 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신흔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단, 대환금리가 신흔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 가능)
- 해약세대 주택가격(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가격 포함)은 옵션내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니 불임 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 확장 비용

■ 발코니 확장 안내

-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입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201~303호는 마이너스옵션 세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남부방식	
주택형	주택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주방/식당	욕실	계약금(계약시)	전금(입주시)
055.0000A	55A	기본공사비(A)	55,340	14,223	761	10,828	7,479	17,056	4,993		
		확장공사비(B)	62,357	15,122	1,644	11,643	8,014	20,661	5,273		
		계약자부담액(B-A)	7,017	899	883	815	535	3,605	280	1,000천원	6,017천원
055.0000B	55B	기본공사비(A)	52,833	25,317	617	7,825	5,084	13,990	0		
		확장공사비(B)	59,883	26,094	1,429	8,256	5,235	18,869	0		
		계약자부담액(B-A)	7,050	777	812	431	151	4,879	0	1,000천원	6,050천원
	55BH	기본공사비(A)	52,833	25,317	617	7,825	5,084	13,990	0		
		확장공사비(B)	59,883	26,094	1,429	8,256	5,235	18,869	0		
		계약자부담액(B-A)	7,050	777	812	431	151	4,879	0	1,000천원	6,050천원

5.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불가

- 공간선택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으로 시공되며, 해약세대의 경우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 가스쿡탑,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기본), 냉매배관(거실+침실1)으로 시공되며, 해약세대의 경우 최초계약자가 선택한 옵션 그대로 승계되며 추가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불임 파일의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옵션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분양계약은 5년 무이자 할부조건이며, 할부금 선납 시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연5.0%, 추후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할인됩니다.
(입주잔금 및 주택도시기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이내 납입하셔야 하며, 입주잔금 완납 시점부터 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등은 수분양자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잔금 완납 전까지 세대 내 물품반입 등이 금지되며, 잔금 납입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후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입주잔금 납입과 동시에 계약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LH를 제1순위로 한 근저당권설정(할부금의 130%이내)됩니다.
-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LH가 부담하며, 소유권이전비용 및 할부금 완납 후 말소, 변경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주택에 대한 임대차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후 가능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7.5%,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응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 응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응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응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민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주택소유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총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6년 11월 07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2026년 11월10일)보다 빠르므로, 입주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기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공고	'25.11.10(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계약장소	양산시 외송로 49 사송 에비뉴원 201-503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계약일정	2025.11.13 10:00 ~ 2026.02.28.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착순 개시일을 포함하여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계약체결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순번추첨 진행 오전 10시 이후 입실하는 분에 대해서는 도착순서대로 순번 교부 (단, 17:00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순번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자정계좌(동호지정 후 자정계좌 안내)에 주택 계약금(4,000천원) + 발코니확장비 계약금(1,000천원)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V. 계약 시 구비서류 참고) 동호지정 당일 17:0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구비서류 제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해야하며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계약체결장소에 방문이 어려운 원격지거주 고객은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210-8537)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동호지정 신청서 제출 후 계약금을 입금했을 때 동호지정이 완료된 것으로 봄 <p>* 선착순 계약은 2026.02.28까지 진행되며,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LH청약플러스 내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p>	

2.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리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안내 등

1.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해오셔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0(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척도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대상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상담 및 계약 관련 문의처 : LH 판매팀(☎ 055-210-8537)

5.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해오셔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0(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척도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대상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주택 계약금(4,000천원) + 발코니확장비 계약금(1,000천원)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15만원) 사본 * 미확인 시에도 계약 가능하나, 미확인 계약 시 인지세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서명 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td> <td>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td> </tr> <tr> <td>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td> <td>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td> </tr> <tr> <td>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 <td>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서명 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인감증명 방식	서명 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증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안내)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안내)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③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한부모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배우자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해당자	본인 및 세대원	•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여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를 포함)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임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⑧ 입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해당자	세대원		• 정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⑩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⑪ 국내가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전매제한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팝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을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계약금(옵션금액 포함)]을 공제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됩니다.
- 대지권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고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금회 공급주택은 양산시송 공공주택지구 2단계 사업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도 대지권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의 AI 스피커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SKT 스피커가 제공됩니다.

- 기타 지구여건 및 단지여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2.04.14.)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23.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609-82-14520)	에이스건설(주) (109-81-43173)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